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2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7

발 의 자:허 영·인재근·이형석

이용빈・황 희・김영배

문진석 · 김정호 · 전재수

위성곤 · 김윤덕 · 김성환

신정훈 · 김성주 · 이용우

김원이 · 서삼석 · 임오경

임호선 · 이소영 · 허종식

김민철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-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예 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·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

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 변화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422호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4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기후변화인지 예산·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
-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6조의3(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의2. 기후변화인지 예산서
-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9의2. 제36조의3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인지

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결산서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은 2022회계연도 예산 안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방재정제도의 연구·개발	제4조(지방재정제도의 연구·개발
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	등)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사항을 연구·개발하여	
시행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8. 기후변화인지 예산·결산 등
	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
	<u>운용 및 분석 방안</u>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6조의3(기후변화인지 예산서
	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
	의 장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
	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
	(이하 "기후변화인지 예산서"라
	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	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에
	따른 예산안에는 기후변화인지
	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	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예산
	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	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

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 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8. ~ 14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 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 략) <신 설>

10. ~ 16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. 기후변화인지 예산서
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
시 등) ①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제36조의3 및 「지방회계
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기후
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후변화
인지 결산서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